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정보취약계층 편의제공 의무화〉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2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장애인·정보취약계층 편의제공 의무화	3
2.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확대 등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8. 27.
3. 회 부 일: 2025. 8. 28.

II.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 및 판결서 등의 열람과 복사에 있어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이들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재판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 및 정보취약계층이 형사재판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여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신뢰를 높이하고자 함.

이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 열람·복사 시 비용을 면

제하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며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2조 등).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정보취약계층 편의제공 의무화

가. 주요내용

개정안은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재판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第42條(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생략) <u><신설></u>	第42條(裁判의 宣告, 告知의 方式)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피고인 가운데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로 된 재판서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 ⑤ (생략) <u><신설></u>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원은 장애인 또는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u>대법원규칙</u> 으로 정한다.	⑧ ----- -----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나. 현행 제도

형사소송법 제180조¹⁾는 국어가 통하지 않는 자에게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도록 규정하고, 제181조²⁾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점자법」 제12조의2³⁾에서 공공기관등에게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서를 점자문서로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⁴⁾에서는 국가에게 장애인 등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1)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2)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3)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등) ①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4)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법원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사법 정보접근권과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가 있음.

다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현행 제도하에서도 형사판결의 경우 판결서 상 판결요지를 한글로 작성⁵⁾하고 있는바 쉬운 말의 의미를 법률용어를 배제하는 취지인 경우 판결문의 내용 전달에 정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지원, 법무부의 법률상담터 사업, 변호사협회의 법률무료상담 등 정부 부처부터 민간 협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률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법률용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여지가 있음.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점자 판결문 요구 시 점자 판결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5) 「법원조직법」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② · ③ (생략)

형사소송법 제181조에 따라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진술 통역인제도 또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제59조의3제6항을 신설하여 법원에게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8조에서 국가의 장애인 등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확대 등

가.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누구든지 <u>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 익적 목적으로 재판이</u>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 ----- <u>재판이</u> ----- ----- ----- ----- -----.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

사) ① ~ ⑤ (생략) <u><신설></u>	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⑦ 제1항에 따른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가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면제한다.</u>
------------------------------------	--

나. 현행 제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1항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검찰청에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투명성 제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다만, 재판확정기록에는 피고인, 피해자, 참고인 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무제한적인 열람·등사를 허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열람·등사의 목적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접근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비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규칙⁶⁾에 근거하여 복사 비용을 징수하고 있음.

- 6)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열람·복사의 방법과 절차) ①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는 판결이 확정된 후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때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4. 12. 31.>

1. 기록의 열람·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다. 개정안 검토

개정안은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 규정을 삭제하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판결서 열람·복사 시 비용을 면제하여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취지임.

첫째,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제59조의2)와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59조의3)의 열람 신청권자를 구분하고 있음. 이는 재판기록과 판결서 상에 포함된 정보의 내용과 범위의 차이가 있는 점에서 구분 필요성이 인정됨. 재판기록에는 개인의 민감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들(전과기록, 의료기록,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4. 집행문 부여의 경우 1통마다 500원(다만, 재판서·조서 정본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다만,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 ④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재판서·조서의 정본을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신설 2025. 9. 1.>
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로 한한다)
- 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이 산재하여 있으므로 누구나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미확정 판결서의 경우에도 2025년 12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2027. 12. 31.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사건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비용은 현재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1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받고 있음. 이는 무제한적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법원의 행정적 과부하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비용을 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액은 2027년 13억 3,100만원, 2031년 13억 3,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6억 5,500만원(연평균 13억 3,100만원)으로 추계 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